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05

발의연월일: 2025. 5. 8.

발 의 자:김남희·박희승·임오경

송재봉·송옥주·박상혁

한정애 · 김우영 · 용혜인

박해철 · 장종태 · 이수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 지고 있음.

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6조 및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제1호 중 "소득보장·재가복지,"를 "소득보장·재가복지, 급식 등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場所를"을 "장소 및 급식을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학습프로그램을"을 "학습프로그램 및 급식 을"로 한다.

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의 제목 중 "경로당에"를 "노인여가복지시설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경로당에"를 "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"로, "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 및 부식 구입비의"를 "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 및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경로당의"를 "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6條(老人餘暇福祉施設) ① 老	第36條(老人餘暇福祉施設) ①
人餘暇福祉施設은 다음 각 호	
의 施設로 한다.	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・	1
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	
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	
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	
병예방과 <u>소득보장·재가복</u>	소득보장·재가복지,
<u>지,</u>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	급식 등
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	
목적으로 하는 시설	
2. 敬老堂 : 地域老人들이 자율	2
적으로 친목도모・취미활동・	
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情	
報交換과 기타 餘暇活動을 할	
수 있도록 하는 場所를 제공	<u>장소 및 급식을</u>
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	
	_
3. 老人敎室 : 老人들에 대하여	3
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	
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	
・老人健康維持・所得保障 기	
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<u>학습프</u>	학습프로

<u>로그램을</u> 제공함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

② (생략)

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

제37조의2(<u>경로당에</u>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<u>경로당에</u>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<u>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 및 부식 구입비의</u>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<u>경로당의</u> 냉 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<u>그램 및 급식을</u>
②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
개정법률
제37조의2(<u>노인여가복지시설에</u>
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)
①
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
<u>복지시설에</u>
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
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
다) 및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
연료비의
<u>.</u>
②
제36조제1항
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